

제22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 회의(2016.9.7.)

#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 - 목 차 -

의안번호	건 명	페이지
2016-49	거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	1
2016-50	거창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6-51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6-55	거창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	7
2016-56	공용건축물(가조119안전센터) 증축 동의안	9

# 거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6. 8. 22.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2016. 8. 23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16. 9. 5.

## 2. 제정이유

-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허용 장소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장소까지 확대됨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역 이외에 추가로 영업 가능한 장소를 조례에 명시하여 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 목적에 관하여 정함(안 제1조)
  - 상위법령(「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함.
- 나.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조례로 위임된 영업장소와 신고서류에 관하여 정함(안 제2조)
  - 공연·전시·도서시설 등의 문화시설,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지역행사

##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가. 이 조례안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허용 장소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역 이외에 추가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장소까지 확대됨에 따라 나.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 가능 장소를 조례로 확대함으로써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 그 밖에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 6. 토론요지: 해당없음

##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 8. 심사결과: 원안가결

##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 거창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6. 8. 22.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2016. 8. 23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16. 9. 5.

## 2. 개정이유

- 군수 직인의 오랜 기간 사용으로 글씨체의 식별이 어려워짐에 따라 공인의 모양, 인영 및 규격에 관한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바꾸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공인의 종류별 규격 변경(안 제4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5조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공인의 종류별 규격을 별표와 같이 변경함.
  - 나. 공인의 인영 사항을 변경(안 제5조)
    - “한글전서체”를 “한글”로 변경하여 인영 선택의 폭을 넓히고
    - “군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를 추가함.
-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8조 반영

##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가. 이 개정 조례안은 군수 직인을 오랜 기간 사용함으로써 글씨체의 식별이 어려워짐에 따라 공인의 모양, 인영 및 규격에 관한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바꾸고자 하는 것으로
- 나. 주요내용으로는 공인의 종류별 규격을 변경하고 공인의 인영 사항을 변경함.
- 다.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6. 8. 22.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2016. 8. 23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16. 9. 5.

## 2. 개정이유

-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대법원판례 등에 부합되도록 보육교직원의 근무상한 연령 등의 세부사항을 개정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합법성과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보육대상 규정을 변경함(안 제4조)

(현행) 보육정책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12세 이하 저학년 보육

(변경) 어린이집의 원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

※ 「영유아보육법」 제27조 규정에 부합되도록 개정

### 나. 근무상한 연령을 삭제함(안 제14조)

(현행) 원장은 60세, 보육교사 및 그 밖의 직원은 57세

(변경) 연령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

※ 「영유아보육법」에서 정년 등 연령에 관한 조항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음.

※ 대법원판례 2007추134 : 법령 위임 없이 권리를 제한한 것은 헌법 제15조에서 보장 하는 직업의 자유 제한에 해당.

### 다. 법제처 정비대상 및 규제개혁 대상 개정함(안 제9조 ~ 제11조)

- 수탁자 의무 중 일부, 수탁자의 행위의 금지, 계약의 해지 조항 삭제함.
  - ※ 상위법령이나 민간위탁에 관한 일반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는 다른 특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삭제, 위탁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조례에 명시한 내용 삭제함.

##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가. 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과 대법원판례 등에 부합되도록 세부사항을 개정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합법성과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나. 주요 내용은 보육대상 규정을 변경하고 보육교직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삭제하였으며 법제처 정비대상 및 규제개혁 대상 조항을 삭제하였음
- 다.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 6. 토론요지: 해당없음

##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 8. 심사결과: 원안가결

##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 거창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6. 8. 23. 강철우 의원 대표발의(표주숙, 변상원, 이성복, 박희순 의원)
- 나. 회부일자: 2016. 8. 23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16. 9. 5.

## 2. 제정이유

- 군민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을 명시함(안 제1조)
- 나. 군수의 책무와 지원내용을 명시함(안 제2조, 안 제5조)
- 다. 인증 취득 및 지원 대상시설을 규정함(안 제3조)
- 라. 인증기준의 관련 법령을 명시함(안 제4조)
- 마. 인증 사후관리 방법을 명시함(안 제6조)
- 바. 인증확산 및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안 제8조)

##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가. 이 제정 조례안은 군민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나. 주요 내용은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적용대상을 정하고 지원대상 시설과 지원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다.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 6. 토론요지: 해당없음

##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 8. 심사결과: 원안가결

##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 [ 공용건축물(가조119안전센터) 증축 동의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6. 8. 22.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2016. 8. 23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16. 9. 5.

## 2. 제안이유

- 가. 가조119안전센터 청사는 거창군 소유 토지에 경상남도 소유 건물로서 신규차량(물탱크) 배치를 위한 차고 진입(높이) 공간과 효율적인 장비관리를 위한 적재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청사 증축에 대한 승낙 요청이 있어
-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청사증축을 통해 소방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토록 증축을 승낙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 가. 가조119안전센터 운영현황
  - 관할지역 : 3개면(가조면, 가북면, 남하면)/ 면적 212km<sup>2</sup>
  - 가조119안전센터는 2005년도 지역대 정원규모로 신축
  - 2010년도 안전센터 승격이후 필수공간 협소로 2013년 1층과 2층 증축 후 소방행정 수요의 증가로 물탱크 차량 배치와 적재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금번에 증축 예정임
  - 청사현황

- 토지(소유:거창군) : 가조면 마상리 467-6, 전, 1,026m<sup>2</sup>
- 건물(소유:경상남도) : 철근콘크리트조, 2층, 연면적 384.49m<sup>2</sup>

#### 나. 증축규모

- 1층 차고 및 식당 증축: 32.38m<sup>2</sup>
- 차고 앞 바닥면 높임

다. 소요예산 : 금72,618천원(도비)

##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가. 이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 시설물을 축조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 나.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467-6(소유자:거창군)에 경상남도에서 공용건물인 가조119안전센터 청사를 차고와 식당 등 용도로 32.38m<sup>2</sup> 증축하고 차고 앞 바닥면을 높이기 위해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 다. 소방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증축하는 시설로 필요성이 인정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등 상위법령과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 6. 토론요지: 해당없음

##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